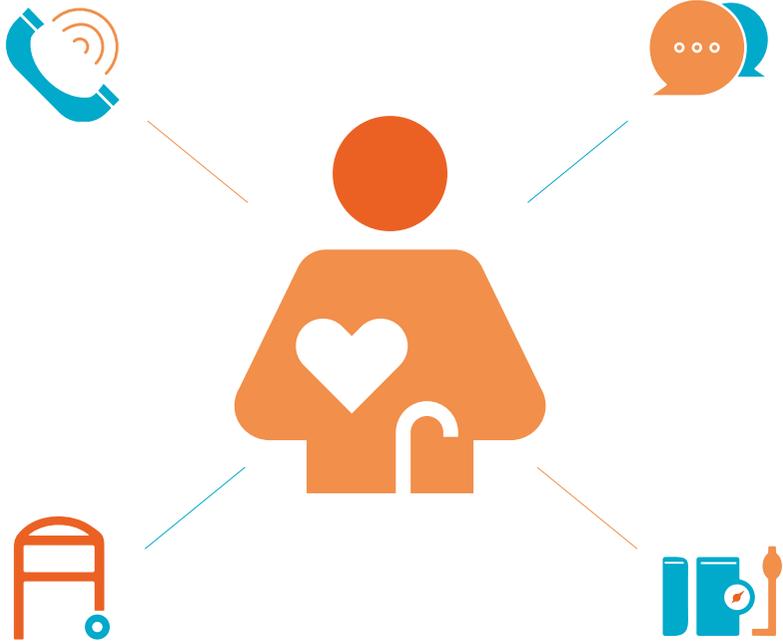


치매공공후견인을 위한
후견사무매뉴얼
핸드북



치매공공후견인을 위한
후견사무매뉴얼
핸드북

I. 기본 후견사무

1. 초기 후견사무 / 6

- 가. 적절한 면담 빈도 / 8
- 나. 후견감독사건번호 확인 / 9
- 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10
- 라. 재산조사, 재산목록 작성 / 10

2. 개시 후 1년까지 실무 / 15

- 가. 일상적인 후견실무 / 15
- 나. 매월 정기보고서 작성 / 15
- 다. 금전지출내역서 작성 / 16
- 라. 후견활동내역서 작성 / 16
- 마. 매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16

3. 후견종료 실무 / 18

- 가. 종료사유 / 18
- 나. 연장여부(감독인과 함께 심사) / 18
- 다. 종료보고서 작성 / 19
- 라. 종료등기 신청 / 19
- 마. 종료 후 긴급사무 처리 / 20
- 바. 후견연장 결정시, 종료 후 재개시까지의 사무처리 / 21

II. 개별 후견사무

1. 재산관리와 관련한 후견실무 / 22

- 가. 후견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처리 / 22
- 나. 예금관리 / 22
- 다. 체크카드 등 이용 / 28
- 라. 공적부조 관리 / 29
- 마. 생활비 관리 / 31
- 바. 주거 관련 관리 / 32
- 사. 병원비 관리 / 35
- 아. 각종 공과금 관리 / 36
- 자. 기타 채무 관리 / 36

- 2. **신상보호와 관련한 후견실무** / 37
 - 가. 신상보호의 의의 / 37
 - 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 37
 - 다. 일상적인 병원 치료 / 38
 - 라. 주거에 관한 지원 / 38
 - 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39
 - 바. 기존 지지체계와의 관계 설정 / 42
 - 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 / 43
 - 아. 요양병원,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한 문제들 / 45
 - 자. 사고활동 / 47

- 3. **피후견인 사망과 관련한 후견실무** / 48
 - 가. 사망 이후 후견사무의 개요 / 48
 - 나. 사망 직후 / 49
 - 다. 사망신고 / 49
 - 라. 상속인이 있는 경우 / 50
 - 마. 상속인이 없는 경우 / 50

III. 후견사무 심화

- 1.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 / 52
 - 가. 심판문에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무 예시 / 52
 - 나. 내부적으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 사무 예시 / 53
 - 다. 법원 허가, 대리권 수여심판을 구할 때 동의서 제출 / 54
 - 라. 후견감독인 동의 수령 방법 / 54
 - 마. 후견감독인 동의 후 사무처리 / 55

- 2. **후견부수사건 실무** / 55
 - 가. 후견부수사건의 종류 / 55
 - 나. 대출행위 / 55
 - 다. 부동산 처분행위 / 55
 - 라. 소송행위 / 57
 - 마.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격리행위 허가 / 61
 - 바. 부수사건 처리 후 보고 / 64

- 사. 후견인 사임 / 64
- 아. 후견인 변경 / 64
- 자. 직무대행자 선임 / 65

3. 학대피해 고령자에 대한 권익옹호 / 65

- 가. 노인학대의 정의 / 65
- 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지원 / 66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조인 / 67
- 라. 손해의 회복 / 67

IV. 후견감독인의 직무

- 1. 개요 / 68
- 2. 주요 사무 / 68
 - 가. 기본 후견감독사무 / 69
 - 나. 개별 후견감독사무 / 73
 - 다. 후견감독사무 심화 / 75



I. 기본 후견사무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후견인은 그가 소유하는 사무후원의 범위 및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을 지원함. 그 권한 밖의 행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아울러 후견인은 공과금 납부, 식재료 구입, 일상생활용품 구입, 정기적인 병원치료 등 간단하고 반복적인 일상사무를 제외한 다른 사무들을 지원할 경우, 후견감독인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음. 후견인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 후견감독인과 항상 상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만큼 후견사무의 질이 높아질 것임. 결국 피후견인의 복리에도 도움이 됨.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 아래 후견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무들을 소개하였음.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안들을 소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별 후견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임. 단, 매뉴얼은 각 사안별로 최대한 일반화한 사례들을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후견인으로서의 피후견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표 2 후견사무 진행 개요도

시기	사무	업무 수행자	비고
후견개시심판 확정 직후	후견감독사건 직권 개시	법원	
	후견등기부에 등기사항 등재	법원	
	후견감독절차안내문 발송	법원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견인	
개시 직후~ 3개월	재산조회	후견인	
	피후견인 초기 면담, 라보형성		

그 이후 일상적 사무수행	피후견인 정기 방문	후견인	후견인은 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감독인과 협의를 거쳐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함.
	재산관리(예금관리, 수급비 관리 등)		
	일상생활비 지출 등 지원		
	일상적인 병원치료, 약처방 등 의료사무 지원		
	일상적 사무수행에 대한 후견인 지원	감독인	
매 1개월	정기보고서 작성·제출(→감독인)	후견인	
	정기보고서 검토·보완요청(→후견인)	감독인	
	정기보고서 보완·제출	후견인	
매 1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작성·제출(→감독인)	후견인	
	정기후견사무보고서 검토·보완요청(→후견인)	감독인	
	정기후견감독보고서 작성	감독인	
	정기후견사무보고서, 후견감독보고서 법원 제출	감독인	
	정기후견사무보고서, 후견감독보고서 검토	법원	
	미진한 내역(첨부서류 등)에 대한 보정명령	법원	
종료전 6개월	정기후견감독 종결	법원	
	연장여부 심사	후견인, 감독인	
종료시	종료보고서 작성·제출(→감독인)	후견인	
	종료보고서 검토·검토의견서 작성, 법원 제출	감독인	
	종료등기신청	후견인	
	최종 후견사무보고서(종료보고서) 제출요구서 발송	법원	
	최종 후견감독종결	법원	

1. 초기 후견사무

Check List

후견개시심판문을 수령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을 수령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감독사건번호, 재판부, 후견조사관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

감독사건번호 : _____ 법원 _____ 후감 _____

감독재판부 : 가사 _____ 단독, 연락처 : _____

담당후견감독관 : _____ 감독관, 연락처 : _____

아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창설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그렇다

발급일 : _____, 발급부수 : _____ 부

아니다

피후견인을 만나보았는가

그렇다

최초 방문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동행자 : _____ (관계 : _____)

아니다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조사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피후견인의 재산내역 조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가

그렇다

재산상 피해 의심, 채무 발견, 미회수 채권 발견,

기타 (_____)

아니다

피후견인의 치료, 거주, 생활, 건강 등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가. 걱정한 면담 빈도

- 필요하다면 자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반드시 매주 1회 혹은 그 이상 자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초기 : 가능한 자주 방문
- 그 이후 : 걱정한 수준으로 방문
- 특별한 사유 발생시 : 수시 방문

나. 후견감독사건번호 확인

(1) 기본후견감독 직권개시

-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후견등기를 촉탁하고, 기본후견 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함.
-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을 수령하면 이미 후견감독 개시된 것임.

(2)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후견감독사건 진행상황 파악

표 4 “나의 사건검색”에서 후견감독사건 진행상황 파악 방법

- ①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검색
- ② 사건번호 입력칸에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피후견인 또는 후견인)”, “자동입력방지문자”를 기입하고 “검색”버튼 클릭

표 5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

- ① 재판부, 후견감독관 전화번호
- ② 최근 기일 내역
- ③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역(후견인, 후견감독인, 제3자 제출)
- ④ 후견개시심판 및 각종 부수사건 등 관련사건 번호(클릭하면 해당 사건 상세 검색내역으로 이동함)
- ⑤ 당사자 내역[청구인, 사건본인, 관계인(참가인)]
- ⑥ 후견인
- ⑦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할 경우, 일자순으로 정리된 법원에서 후견인 등에게 송달한 문건명, 송달일자, 후견인/후견감독인/제3자가 제출한 문건명, 제출일자, 심문기일, 조사기일 일자 및 시행여부

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역할

- 후견인의 지위와 권한을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
-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지참 필수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법원 방문
- 발급 수수료 : 1부당 1,200원
- 대리발급 가능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활용

- 원본 보다는 사본 제출
- 은행 등 금융기관 : 3개월 이내 발행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제출 요구 최초 방문시 원본 제출하고, 그 이후 사본 제출받아달라고 요청할 것

라. 재산조사, 재산목록 작성

(1) 재산조사의 필요성

- 특정후견 : 재산목록 작성 의무 없음.
- 그러나 투명하고 계획적인 후견사무 수행 : 피후견인 재산 내역 조사 필수
- 미파악 재산 또는 재산상 피해 발견할 수 있음.
- 사회조사보고서 기재 재산내역부터 조사하면 됨.

(2) 예금 조사

- 계좌 관리 은행 방문하여 피후견인 명의 잔고증명서 발급
- 예금계좌의 과거 1개년 거래내역서 발급
- 수급비 계좌를 비롯한 사용 중인 계좌 파악 : 비밀번호 변경, 지급정지, 압류 내역, 자동이체 내역,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존재 여부 등 확인
- 피후견인 계좌 지급정지 또는 자동이체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

(3) 보험 조사

- 보험사고객센터에 계약 내용 확인서, 보험증권 발송 요청
- 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 : 수익자가 누구인지, 피후견인과의 관계와 수익자로 기재된 경위 등 확인, 필요하다면 수익자 변경 고려

(4) 임대차계약에 대한 조사

- 피후견인 주거 임차 : 임대차계약 내용(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및 확정일자 발급 여부, 전입일자 파악 필수
- 임대차계약서 확보 : ① 피후견인 확인 / ② 임대인에게 요청 / ③ 공인 중개사에게 요청 / ④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5) 공적부조

-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
- 사회조사보고서 기재 내역을 바탕으로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확인

(6) 세금

- 체납 세금 존재시 납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조치 이행
- 과도한 소득세,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 : 그 내역 파악하고,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

(7) 채권, 채무

(가) 채권

Check List

피후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발견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 채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는가

그렇다

입증자료의 종류 : _____

아니다

채권의 내용,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는가

그렇다(이하 기재)

채권액 : _____ 원

변제기 :

이자 :

채무자 성명 : _____, 연락처 : _____

채무자 주소 :

아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닿는가

그렇다

연락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연락방법 : 휴대폰 전자우편 대면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하는가

그렇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액 : _____원

채무자가 제시하는 증명서류 :

아니다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법적 절차(내용증명발송, 소송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가

그렇다 아니다

(나) 채무

Check List

피후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발견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채무의 내용,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는가

그렇다(이하 기재)

채무액 : _____원

변제기 :

이자 :

채권자 성명 : _____, 연락처 : _____

채권자 주소 :

아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는가

그렇다

연락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연락방법 : 휴대폰 전자우편 대면

아니다

채권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았는가

그렇다

증빙서류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기타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기타 서류(_____)

아니다

피후견인이 채무를 변제하였는가

그렇다

변제액 : _____ 원

증명서류 :

아니다

피후견인이 채무를 변제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채무변제계획을 채권자와 협의하였는가

그렇다

일시변제(변제예정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변제(분할횟수 : _____ 회,
 변제주기(ex. 주1회, 월1회 등) : _____, 횟수별 변제액 : _____ 원)
- 아니다
- 채권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가
- 그렇다 아니다
-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아니다

2. 개시 후 1년까지 실무

가. 일상적인 후견실무

- 예금거래내역 조회, 예금 이체 등 은행 업무
- 기초생활수급비 등 공적부조 관리업무
- 일상생활비 지출 지원 업무
- 일상적인 의료행위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업무

나. 매월 정기보고서 작성

- 피후견인 대리, 계좌이체·금전 지출 내역 존재 :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피후견인 직접 사용 금전(용돈) : 별도 증빙 불필요
- 피후견인 생활모습, 주거지 촬영 사진 첨부

- 단순 반복 사무 지원 : 간략 기재

다. 금전지출내역서 작성

- 피후견인 재산 증감변동 내역 보고 필수
- 매월 금전지출내역서 작성, 증빙자료 첨부, 감독인에게 제출

라. 후견활동내역서 작성

매월 자신의 후견사무 수행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 보고.

마. 매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작성

(1)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

심판문상 제출 기준일 확인

표 8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 예시

1.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심판확정일을 확인함.

2020. 3. 10.이 확정일이라면, 2020. 3. 10.부터 2021. 3. 10. 까지의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함.
그 다음해는 2021. 3. 11.부터 2022. 3. 10.까지의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특정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심판문에 2020. 3. 31.을 시작으로 매월 3. 31. 보고서를 감독인에게 제출하고, 감독인은 2020. 4. 30.을 시작으로 매월 4. 30. 감독보고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 심판 내용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함.

3. 매년 후견보고서 및 후견감독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재하는 경우

심판문에 기재된 날까지 후견사무보고서 및 감독보고서를 각 제출함.

(2) 후견사무보고서의 내용

① 피후견인·후견인·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 ② 신상보호내역, ③ 재산 목록, ④ 수입·지출내역, ⑤ 향후 계획 및 후견인의 의견

(3)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전 준비사항(Check List)

표 9 후견사무보고서 증빙서류 예시

구분	항목	상세설명	구비여부 체크
필수	은행 잔고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조회기준기간 = 보고기간 신규계좌 · 정기예금도 모두	
	계좌 해지 증명서, 이체증명서	예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 증명서 및 이체 내역서 첨부	
	금전지출내역서	매월 작성한 금전지출내역서를 보고기간에 맞추어서 제출하면 됨. 수입, 지출내역 모두 기재	
	수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계좌 거래내역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가능 (Ex. 수급비, 기초연금 등은 생략가능)	
	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 (영수증 등)	피후견인이 직접 소비한 용돈은생략 계좌 거래내역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생략 가능 (Ex. 자동차체를 해 둔 공과금, 세금) 후견인이 대리하여 이체하거나 지출한 내역은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기타 재산 변동 내역 증빙서류	Ex. 1 임대차계약 체결시 → 임대차계약서 첨부 2 신규 보험 계약 체결시 → 보험증권 첨부	
	정기보고서, 후견활동내역서	매월 작성한 것을 제출하면 됨.	
	피후견인 생활 사진	주거환경 등 피후견인 생활상이 드러나는 사진으로 최대 10매	

필수	진단서	피후견인 건강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 그 시점에 발급받은 진단서 or 보고 기준일에 근접한 시점에 발급받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소확인서	종합병원 · 요양병원 입원, 요양원 입소시	
	소송위임장, 소송 진행 내역 (나의 사건검색 캡처 등), 판결문	소송 진행시 , 종결 전이라도 중간보고차원에서 관련 자료들 제출	
선택	진단서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 보고 기준일에 근접한 시점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있다면 제출해도 무방함.	
	사례회의록	정기보고서 등으로 불충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메모, 카카오톡 내용 등		
	기타	기타 후견사무보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3. 후견종료 실무

가. 종료사유

기간만료, 피후견인 사망, 후견인 사임 또는 변경

나. 연장여부(감독인과 함께 심사)

- 후견기간 만료 6개월 전 : 연장 여부 심사
- 후견 종료 원칙
- 후견 목표 미달성 또는 새로운 후견 필요 사유 발생 : 후견 연장
- 연장 결정 : 현 후견인 유임 또는 새로운 후견인 선임 여부 심사

다. 종료보고서 작성

- 종전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이후~종료시까지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제출
- 후견인 사임 변경의 경우, 법원에서 종료보고서를 제출토록 명령할 경우 제출함.(현재까지는 법원으로부터 종료보고서 제출명령은 없는 상황)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를, 피후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기재함.
- 종료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감독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라. 종료등기 신청

- 후견인 : 후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 신청해야 함.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후견감독인도 할 수 있음.
- 후견인 사임, 변경의 경우 : 종료등기신청 불필요
- 종료등기 전, 종료보고서 작성,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등의 사무 처리 필요
- 종료등기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순번	서류명	비고
1	종료등기신청서	
2	기본증명서(폐쇄)	피후견인 사망시에만 제출
3	주민등록초본	
4	후견등기사항증명서	
5	후견인 신분증사본	
6	후견인 인감증명서	

마. 종료 후 긴급사무 처리

(1) 긴급사무의 의의

- 후견종료 후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 후견인은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함.
- 대표적인 사례

표 11 급박한 사정의 예

	종료사유	급박한 사정	비고
사망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관리인 미선임	
	상속인 존재	주소, 연락처 등 확인불가, 연락 불가능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사망 후 장례 등 사무	III.3.참조
후견 기간 만료	후견연장	후속 후견 미개시 (재산청에 따른 후견개시심판 청구 지연)	
		후견개시심판 후 후견인 활동개시 전	
	후견종료	피후견인 본인 주위의 안전망 미형성	
		피후견인 지원자에 대한 인수인계 미흡	
공동		채무 변제기 도래	미변제시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하여 피후견인에게 불이익함.
		공과금·세금 납부	미납부시 가산세 등이 발생하여 불이익함.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사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음.

(2) 채무 변제, 세금납부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공과금,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존재하는 경우,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세금 납부 또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3) 병원비 정산

- 후견기간 만료 : 후임 후견인 선임심판 또는 다른 지원자 등장할 때까지 병원비 납부를 연기할 수 없음. 그러므로 피후견인 재산에서 병원비를 납부해야 함.
- 피후견인 사망 : 잔여 병원비 정산 전에는 퇴원조치 및 시신인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비 정산 및 납부를 해야 함.

(4) 장례비용

- 장례비용 : 상속인 또는 지자체 담당자(무연고자인 경우) 소관임.
- 장례비용 :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불

바. 후견연장 결정시, 종료 후 재개시까지의 사무처리

- 후견 종료~후견개시심판 : 공백 발생
- 공백발생예방 : 공과금 자동이체신청, 발생 예상 지출 대비

II. 개별 후견사무

1. 재산관리와 관련한 후견실무

가. 후견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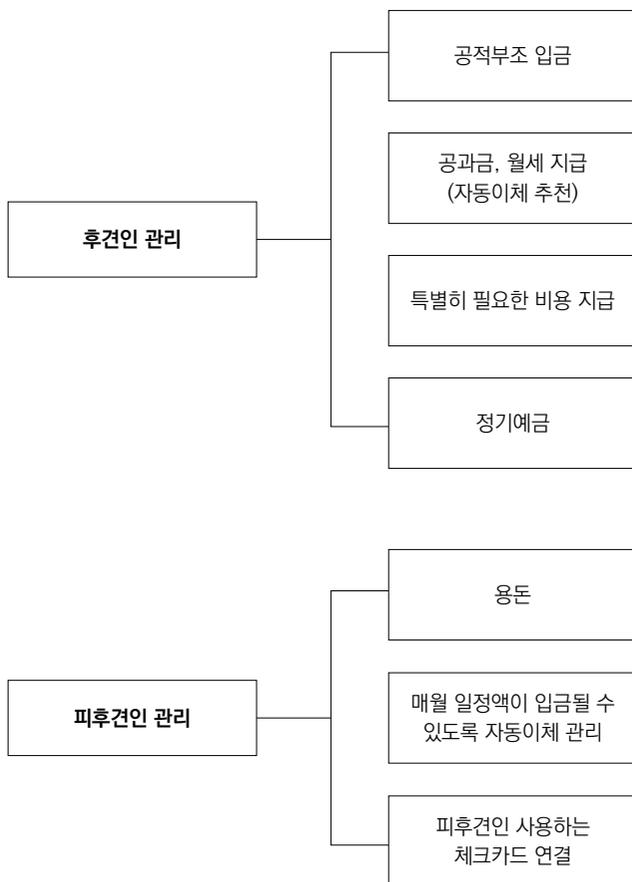
- 후견사무 수행 비용 :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
Ex.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은행 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 공적 서류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 대리권추가·변경·허가 등 부수사건 심판청구에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 그러나 후견인 업무수행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는 후견인 활동비에 포함됨. 따라서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해서는 안 됨.

나. 예금관리

(1) 예금관리 기초

- 후견인 관리 계좌, 피후견인 사용 계좌 분리
- 피후견인 계좌 리스트 별도 정리, 계좌 비밀번호 유출 유의
- 정기적인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피후견인 재정상황 점검, 변동 대응 필요

그림 1 피후견인 예금계좌 관리 기초



(가) 후견인이 관리할 계좌

Check List

기초생활수급비 등 공적부조가 입금되는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행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공과금, 월 차임이 위 계좌에 지급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공과금 출금 계좌 : _____

월 차임 출금 계좌 : _____

공과금, 월 차임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었는가

그렇다

자동이체 신청해 둔 공과금, 월차임 내역

아니다

정기예금, 적금계좌가 있는가?

그렇다

(1) 계좌번호 : _____, 만기일 : _____,

예금액 : _____ 원

(2) 계좌번호 : _____, 만기일 : _____,

예금액 : _____ 원

(3) 계좌번호 : _____, 만기일 : _____,

정기 납입액 : _____ 원

아니다

위 통장들을 후견인이 보관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감독인이 보관 중 피후견인이 보관 중

(나) 피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

Check List

피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가 존재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위 계좌에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가?

그렇다

금액 : _____ 원, 지급일 : _____

아니다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수상한 입·출금내역이 발견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수상한 입·출금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재산상 피해가 발견되었는가?

그렇다

피해의 내용 :

검토 중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

아니다

(다) 예금계좌 관리 방법

은행업무시 필요한 지참 서류 : 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발급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② 후견인 신분증

(라) 은행을 상대할 때 유용한 대처법

- 후견인이 이용하는 은행 지점 또는 특정 지점을 계속 방문할 경우, 같은 직원과 반복적으로 업무를 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담당 직원의 후견제도 이해도 상승하여 새로운 업무 진행 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업무 협조가 곤란하다고 할 경우, 다른 지점 방문하거나 피후견인 계좌를 다른 은행에 새로 개설하는 것도 고려
- 감독인과 상의하여 진행할 것

(2) 비대면거래 신청

- 주요 비대면거래 :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카드·체크카드·ATM기기.
- 2020. 4월 기준, 은행 주요 비대면거래 허용 여부

표 15 은행 비대면거래업무 허용 여부(2020. 4.기준)

순번	항목	가능여부	비고
1	현금카드, 체크카드 발급	대리권 보유할 경우 가능	신한,우리,제일,씨티,국민,하나,기업,농협,경남,광주, 대구,전북,부산은행 가능 (근거: 2019. 12. 6.자 금융기관 간담회 자료)
2	인터넷뱅킹	X	시스템 구비되지 않음.
3	ATM 이용	△	현금카드, 체크카드 발급시 가능해질 것임
4	폰뱅킹	△	계좌거래내역 조회 업무는 가능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제시 문제

- 후견인 : 3개월 이내 발급한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비용발생, 시간소비 많음.
- 은행 직원 중에는 3개월에 1회만 원본 제출받고, 그 사이 발생 은행거래시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보관하는 경우도 있음.

(4) 금융거래내역 조회

- 정기적으로 피후견인 계좌 거래내역 확인함으로써 재산상 피해 발생

조기 발견, 예방 위함

- 금융거래내역 조회 방법 : 은행 직접 방문, ATM기기 이용 통장정리, 폰뱅킹을 통한 거래내역 확인, 폰뱅킹을 통한 거래내역 팩스 수신(권고)

다. 체크카드 등 이용

Check List

피후견인에게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는가

그렇다

카드번호 : _____

보관자 : _____

대금결제계좌 : _____

아니다

피후견인 명의의 직불카드가 있는가

그렇다

은행(카드사) : _____, 카드번호 : _____

아니다

체크카드를 요양보호사 등 지원자에게 맡겨두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별도로 두었는가

그렇다

- 수급자에 대해 후견개시될 경우 급여관리 제외되므로 후견인이 수급비 관리하면 됨.

(2) 급여 대리수령 제도

표 18 공적부조 대리수령제도 비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요건	성년후견개시 또는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또는 치매 등으로 거동 불가능
동의 필요 여부	수급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X
신청권자	대리수령인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신뢰할 수 있는 피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가 존재할 경우, 수급비 대리 수령신청 권한 부여 가능함. 법원의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에게 수급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을 받아 진행하거나,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부터 수급비 사용 내역 보고받아야 함.
- 특히,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 피후견인의 수급비로 배우자도 생계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에게 대리수령 권한부여를 고려할 수 있음.

(3)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 수급비 = 압류금지
- 압류 예방 :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

표 19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비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개설가능 통장 개수	1개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다면, 그 계좌로 수급계좌 변경 가능)	
급여 외 다른 금원 입금 가능 여부	불가능 (수급비만 입금)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시중은행,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 등)	수급자의 수급 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사본 첨부)

마. 생활비 관리

(1) 평균 지출내역 파악

- 정기 지출 내역(고정비)와 부정기적 지출 비용의 평균치를 파악함
- 사회조사보고서를 참고하되, 직접 후견사무를 수행하며 평균 지출액을 파악

(2) 일상생활비

- 예상 밖 지출 대비, 피후견인의 식비, 간식비, 의복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을 계획적으로 잘 관리해야 함.
-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의복(여름용 내의, 겨울용 내의, 겨울 점퍼 등) 또는 생활용품(겨울용 이불, 여름용 이불 등), 형광등, 주방용품, 화장실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도 계획적으로 마련
- 수급비에서 일정액을 비상금조로 마련

(3) 동거친족, 요양보호사 등 지원자에게 일상생활비 지출 업무 위임

- 피후견인의 필요 물품을 후견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피후견인 명의의 계좌 중 하나를 일상생활용품 비용 지급용으로 지정, 매월 평균 지출 일상생활비 이체하여 지원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동시에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함께 교부, 그 이용내역을 후견인 휴대폰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두면 상시 모니터링 가능

바. 주거 관련 관리

(1) 새로운 주거지 물색 방법

- 이사가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
- 가능하면 피후견인 동행 아래 이사할 곳 물색
- 피후견인이 직접 집을 보러 다니기 어려운 경우, 사진·동영상 등을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와 기호 확인

(2) 임대차계약 체결

(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 부동산의 하자 여부, 신체가 불편한 피후견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전세권 등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법률상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아야 함.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인터넷에서 열람.
- 보증금, 월세, 임대차기간 반드시 확인

(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표 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요건

대항력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① 점유 ② 주민등록	③ 확정일자

- ① 점유 : 해당 부동산 인도받는 것.
- ② 전입신고(주민등록) :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사한 날) 바로 임대차계약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 인도&주민등록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
 - Ex. 2020. 4. 5. 잔금, 이사 및 주민등록 → 대항력 : 2020. 4. 6. 0시부터 발생
- ③ 확정일자 : 주민센터에서 받음. 주민등록시 함께 부여받는 것이 보통임. →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정일자도 부여해달라고 요청해야 함.

(3) 임대차계약 유지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정해진 날에 월세를 지급해야 함.
- 2회 이상 월세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가능

(4) 임대차계약 종료

- 임대인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직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차인 : 1개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마찬가지로 직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묵시적 갱신의 경우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이 때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됨.

- 임차인 : 통상 목적물 원상회복 의무 존재

(5) 특수사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임대차계약 종료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위해 이사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피후견인이 요양원 등 입소 필요한 경우 : 보증금 반환 지연되면 입소할 요양원 등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워짐으로써 입소 지연 상황 발생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활용 필요. 임차권등기시 전피후견인 이사(전입신고)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됨.
- 요건 : ① 임대차계약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한 서류

표 2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서류

순번	서류명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1	주택 등기부등본(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2-2	건축물대장(등기가 없는 경우 등)
3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4	주민등록초본 등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6) 특수사례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¹신청을 할 수밖에 없음.

- 지급명령절차 : 민사소송보다 간이, 비용 저렴하므로 우선 고려.
- 지급명령 : 임대인이 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됨. 이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법원의 별도 허가 필요함.
- 감독인의 도움 아래 감독법원에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청구, 그 심판에 따라 소송 제기
- 지급명령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판결 확정되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후 주택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음.
※ 임차인인 피후견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지 미리 검토 필요
- 피후견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유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가능.

사. 병원비 관리

- 후견이 개시된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또는 후견인에게 병원비 지급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곳 다수
- 후견인은 병원비를 연대보증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대보증 요구 거절해야 함.
- 재산이 부족한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활용

1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민사소송법 제462조

아. 각종 공과금 관리

- 공과금 연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 매월 정기 납부 공과금 : 자동이체신청

자. 기타 채무 관리

(1) 채무 변제

- 채권자와 협의 변제계획 수립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함.
- 연체 이자로 채무가 늘어나는 것 방지
- 채권자가 피후견인 계좌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비를 비롯한 공적부조금을 사용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2) 금전 대출시 참고할 점

- 이율 확인.
-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
- 피후견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명목이 무엇인지 불문, 대부업자에게 원금 외에 지급한 돈은 모두 이자.
-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 피후견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대출 원본임.

(3)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의 존재 등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등을 통해 신속히 분쟁 종결하는 것이 유리함.
- 채무의 존재여부, 채무액에 대하여 다툼 여지가 있다면, 응소해야 함. 그러나 패소 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어느

정도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유리함.

- 반드시 감독인,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함.

2. 신상보호와 관련한 후견실무

가. 신상보호의 의미

- 신상 : 어떤 사람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변에 관한 사항을 의미
- 예. 요양과 감호에 대한 사항,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주거·거소의 결정,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후견인 :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만 신상보호 수행

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1) 기초생활수급 여부 확인

피후견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

(2) '복지로' 활용²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소개되어 있는 곳임. “노년”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피후견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교 및 연계가 가능

(3) 서비스 연계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 복지

2 www.bokjiro.go.kr

시설을 통해 신청

(4) 복지서비스 신청 시 지참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 신분증
- 후견개시 심판문, 후견인 도장 요구하는 경우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다. 일상적인 병원 치료

(1) 만성질환 일상관리

- 정기적인 병원방문, 투약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지원
-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 투약관리가 매우 중요함.

(2) 정기검진

정기적인 건강 검진 필수

(3) 응급상황

피후견인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라. 주거에 관한 지원

(1) 주거의 관리

- 집안 내 기본적인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 수도·전기·가스 등의 기본시설, 배관·전등·방풍·벽지상태 등 점검

(2)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함.
- 임대인 :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로 활동 가능하므로 원만한 관계를 맺어두면 후견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3) 공과금 관리

주거와 관련된 공과금 등이 잘 납부되는지 확인

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서비스 : 피후견인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제도가 될 수 있음.
- 요양보호사를 통해 피후견인 안부 확인,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관리·감독 가능함.
- 피후견인이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한 경우, 시설에서 피후견인에게 24시간 요양서비스 제공하므로, 피후견인의 시설 적응여부, 방임 또는 학대 피해 여부 등 점검해야 함.

(1) 재가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피후견인에 한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등 서비스 이용 가능

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표 24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의 종류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자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 실외)

(2) 시설

-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 입소 :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함.

- 입소할 시설 선정 기준 : 피후견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곳, 피후견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곳
- 시설 입소시, 후견인은 평소보다 자주 방문하여 피후견인이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표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의 종류

시설 종류	시설급여의 정의	입소정원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3).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이용

- 피후견인의 신체조건이 양호하고, 재가(在家)생활 중이라면 주간보호센터 이용 검토
- 장점 : 후견인 외에 추가로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
- 데이케어센터 이용은 하루 3~4시간 동안 제공되는 방문요양서비스보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표 22 데이케어센터 이용 정보

- ①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② 이용시간 : 평일, 8:30~20:30, 토요일 9:00~18:00
(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 ③ 예상비용 : 월 20회 이상 이용시, 식비포함 20~25만원 선

바. 기존 지지체계와의 관계 설정

(1) 가족과의 관계 설정

- 후견인은 조심스럽게 피후견인과의 가족과 관계를 맺어야 함.
- 후견인은 꾸준히 가족들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단, 피후견인의 가족이 피후견인을 학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

(2)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설정

- 요양보호사와 피후견인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많음.
- 요양보호사 : 후견인보다 피후견인의 선호, 생활습관, 평소 기분 등 개인적 특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협조 필수
- 초기부터 요양보호사와 명확히 관계를 설정해야 함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 보호자,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함.
- 요양보호사는 계약에 따라 피후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므로, 본인의 대리인인 후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함.
- 요양보호사가 피후견인 복리에 반하여 태만하게 서비스 제공할 경우 즉시 교체 추진해야 함.

(3) 이웃과의 관계 설정

- 이웃은 언제든지 피후견인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음.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응급상황에 즉각적인 대처 가능함.
- 이웃의 예 : 통장, 같은 건물 주민, 집주인, 상점주인, 동년배 어르신 등

(4) 요양기관과의 관계 설정

(가) 재가시설 (방문요양 등)

-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파견, 관리, 감독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함.
- 요양보호사가 정시 출·퇴근을 하는지 여부, 집안 청소 상태, 식생활지원, 병원 동행 등 피후견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나) 입소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

- 시설이 피후견인에게 적절히 생활 환경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모니터링 사항 : ① ‘대·소변 등의 위생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② ‘일일 건강체크가 정기적이며 그 누락은 없는지’, ③ ‘만성질환의 투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④ ‘식사는 제대로 제공되는지’, ⑤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의 근무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5) 복지시설 관계자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자, 노인종합복지관·재가서비스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 사례담당자와 밀접한 관계 유지 필요
- 피후견인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함께 논의
- 피후견인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 복지시설을 탐색하여 협력할 수 있는 담당자를 찾을 수 있고,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음.

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

(1)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정의

- 연명의료 :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Ex.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와 같은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함.³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리 작성 불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타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음.
- 어떤 경우에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음.

(4) 후견개시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작성된 경우

- 피후견인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두었거나,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직계가족의 진술 등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연명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후견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알

3 같은 조 제6호

리거나, 피후견인의 직계가족들을 병원으로 방문하게 하여 피후견인의 의사를 담당의사 등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등의 사실적인 도움을 주면 충분함.

아. 요양병원,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한 문제들

(1)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문제

(가) 본인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피후견인이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존재 또는 의료기관에서 피후견인과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시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피후견인이 의사 표현도 없는 경우 : 피후견인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배우자, 피후견인의 부모 또는 자녀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피후견인의 의사로 봄.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피후견인 가족의 진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본인의 뜻에 의하지 않은 연명의료 중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 허용
- 피후견인의 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 존속(부모)·비속(자녀) 전원의 합

의료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음.

- 후견인 : 어떠한 경우에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없음.

(다) DNR 동의서

- DNR동의서 = 연명의료중단 동의서임.
- DNR 동의서 작성 역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대로 배우자, 1촌이
내의 직계존속·비속, 그들이 없다면 2촌 이내의 직계존속·비속, 그마
저 없다면 형제자매 전원의 합의로 작성해야 함.
- 후견인은 DNR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음.

(2) 병원비 연대보증 요구와 관련한 문제

- 의료기관의 후견인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 의료법 위반
- 후견인 : 단호하게 거절해야 함.
- 감독인 : 연대보증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의료
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검토해야 함.
- Cf. 의료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 없
이 진료를 거부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건의료기본법 :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
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성별·나이·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함.
-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거나, 그 병원비를 연대
보증할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3) 긴급한 수술행위에 대한 동의 문제

(가) 의료법에 따른 동의 없는 수술

- 원칙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의 경우 환자(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함.
- 예외 :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 수술행위에 대한 동의 권한이 없는 후견인 : 의료법 제24조의2를 근거로 의료기관에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 없는 수술

- 응급의료기관 :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응급의료기관 : 피후견인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후견인 동의권이 없다고 하여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음. 응급의료기관은 후견인 등 피후견인과 동행한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 시행해야 함.

자. 사교활동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재가복지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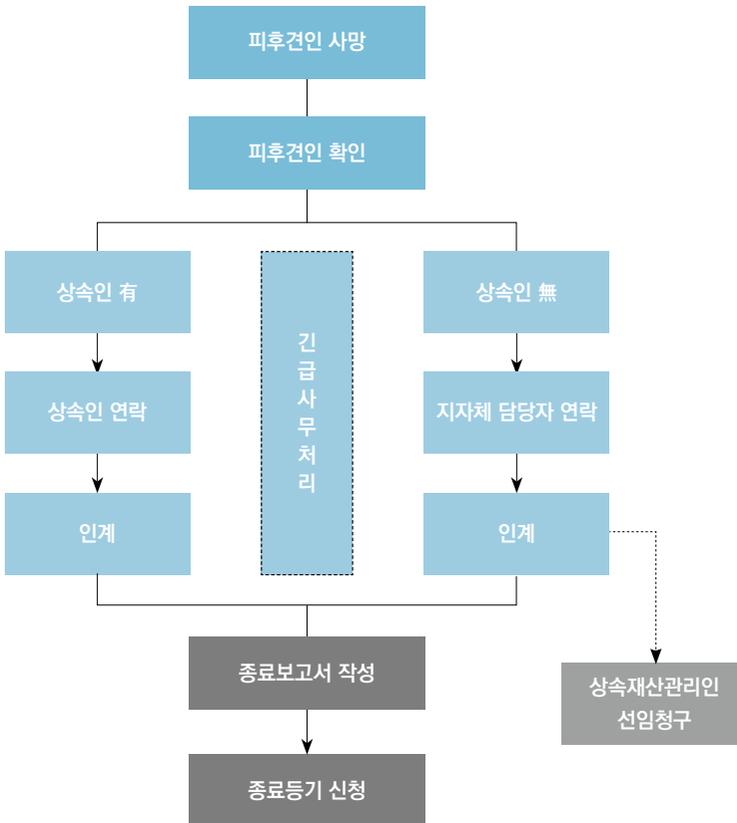
2) 종교활동

피후견인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종교활동 지원해야 함

3. 피후견인 사망과 관련한 후견실무

가. 사망 이후 후견사무의 개요

그림 2 피후견인 사망 후 업무 개요도



나. 사망 직후

(1) 피후견인이 요양병원, 요양원, 종합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가) 피후견인 시신 확인

(나) 상속인 또는 지자체 담당자 연락

- 피후견인이 무연고자인 경우 :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
- 연락이 닿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에게 즉시 연락.
- 상속인이 해외 또는 먼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 상속인 희망 장례식장 확인 후 피후견인 안치까지 지원해야 할 수 있음.
-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할 것

(다)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 10부 정도 발급

(라) 장례식장으로 시신 안치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이동수단 : 별도 요청

(2) 피후견인이 집에서 사망한 경우

- 경찰과 119에 동시 신고해야 함. 경찰 변사자 처리 절차 진행 후 경찰 안내에 따라 장례식장 등으로 피후견인의 시신 안치
- 그 밖의 절차는 (1)항과 같음.

다. 사망신고

(1) 관련 규정

- 사망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친족,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사람, 요양

원·요양병원장 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통·이장

- 신고기한 : 피후견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 신고기관 :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의 시·읍·면의 장

(2) 후견인은 사망신고 의무자가 아님

(3) 사망신고의 효과

- 피후견인 명의 재산 동결됨에 따라 후견인이 계좌거래내역 등 조회, 장례비용, 병원비 등 잔여 채무 정리 불가능해짐.
- 피후견인의 상속인만이 피후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재산내역 조회 가능

(4) 사망신고 전 계좌거래내역 등 발급

- 마지막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사망일까지 기준 피후견인 보유 예금계좌 거래내역 발급

라.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원칙 : 피후견인 사망 사실 통지, 종료보고서 작성·제출, 후견종료등기 신청으로 업무 종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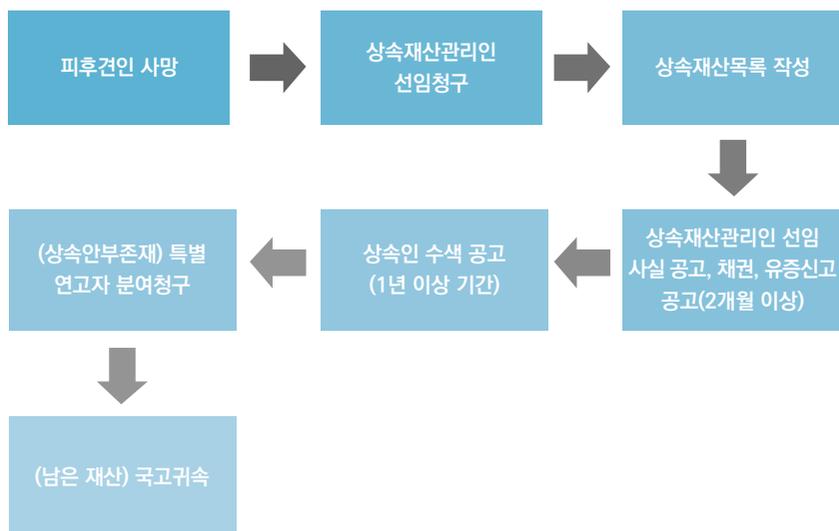
마. 상속인이 없는 경우

(1) 무연고자 장례절차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각 지자체 무연고자 장례 혹은 공영장례와 관련한 조례, 지침

(2) 참고 :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한 사무

그림 3 상속인이 없을 때 사후 사무 처리 개요



III. 후견사무 심화

1.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

- 법원이 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후견인의 대리권행사에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음
- 후견개시심판문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후견인의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적절한 경우 존재
- 법원에 대리권 변경 또는 허가를 구할 때 감독인의 동의서 첨부하면 청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리기간도 단축됨.

가. 심판문에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무 예시

표 28 감독인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행위

항목	실무상 운용실태	비고
영업에 관한 행위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에도 보통 감독인 보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950조, 제 959조의6 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적용됨. 특정후견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행위를 특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음.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예. 증여)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예. 부동산 매각, 부동산 담보제공)	“중요한 재산”에 대한 해석문제가 있음. “중요한 재산”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해당 거래가 그에 관련된 행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임.	

소송행위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에도 보통 감독인 보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임을 주의)	
임대차계약 체결	공공후견이 아닌 일반 후견의 경우, 법원에서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나. 내부적으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 사무 예시

(1) 원칙

- 후견인 단독 대리 가능하나, 내부적으로 감독인 동의 받아두는 것이 적절한 경우 있음.
- 후견인 업무 수행 부담 및 감독인 감독 부담 경감

(2) 임대차계약

표 29 임대차계약 관련 감독인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항

항목	주요 협의 및 동의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목적물 주소, 현황, 임대인, 보증금액수, 월세,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 변경	변경하는 계약의 내용(보증금, 월세,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계약 해지	해지 사유, 피후견인 주거지 확보 여부,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과 관련한 임대인 협의사항 등

(3) 신탁계약

표 30 신탁계약 관련 감독인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항

항목	주요 협의 및 동의사항
신탁계약 체결	수탁자, 신탁 수수료, 신탁조건, 신탁기간, 후건 종료 후 신탁계약 유지 방안,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여부 등
신탁계약 변경	변경하는 계약의 내용(신탁조건, 신탁기간 등)
신탁계약 해지	해지 사유, 해지 후 신탁재산의 귀속 방안(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는지, 피후견인 재산으로 귀속시키는지) 등

(4) 소송행위

표 31 소송행위 관련 감독인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항

항목	주요 협의 및 동의사항
소송 초기	소제기(원고), 응소(피고), 형사고소·고발 여부, 변호사 선임 여부, 선임할 변호사, 선임조건(착수금, 성공보수 등) 등
소송 중기	항소 여부, (조정예 회부된 경우) 조정안 수락 여부, 항소심에서 변호사 변경 여부, 항소심 변호사 선임 시 선임조건(착수금, 성공보수 등) 등
소송 말기	판결 확정 이후 후속 조치(판결 이행을 위한 상대방과의 협의, 강제집행 등) 등

다. 법원 허가, 대리권 수여심판을 구할 때 동의서 제출

법원에 대리권 수여 또는 허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감독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심리 도움

라. 후견감독인 동의 수령 방법

후견인이 동의서를 요청하면, 감독인은 필요성 등을 조사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여 후견인에게 교부함.

마. 후견감독인 동의 후 사무처리

후견인 사무 수행 후 감독인 경과 보고 및 후속조치 협의

2. 후견부수사건 실무

가. 후견부수사건의 종류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 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후견인 변경 청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등

나. 대출행위

대출이 필요한 경우 : 이미 피후견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일로 많은 병원비 또는 요양비가 발생하는 경우 등

통상 공공후견인 : 대출행위에 대한 대리권 없을 것임. 그러므로 감독인과 협의 후 법원에 대출행위 허가 또는 대리권 추가 심판청구 검토

다. 부동산 처분행위

(1) 부동산 처분행위의 의의

부동산 매매, 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2) 부동산 매매

- 대략적인 시세 조사 후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심판 청구

- 청구서 내용 : ① 대출 등 다른 방법이 아닌 매각을 하려는 이유, ② 현재 시세(KB부동산시세,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 첨부), ③ 예상 매매가격, ④ 매각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등
- 매각 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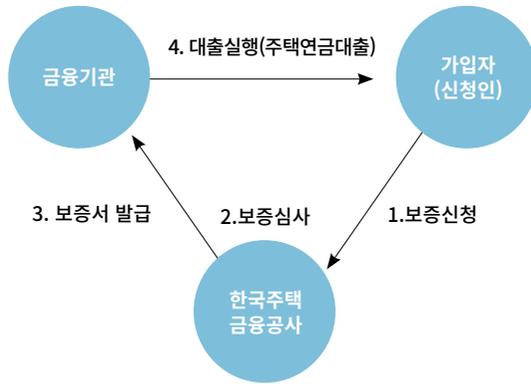
(3) 부동산 담보대출

- 부동산 담보대출 : 정부대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임.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 소재지, 피후견인 소득 정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액수에 큰 차이
-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허가심판청구 : 병원비 마련, 생활비 마련 등 대출이 필요한 사유, 그 사용 및 보관 방법 소명

(4) 주택연금

- 주택연금의 구조
 - ① 주택 소유자와 금융기관 : 주택 담보가치 상응하는 대출, 대출금 매월 분할 수령
 -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 : 주택 소유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 보증
 - ③ 주택 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

그림4 주택연금 개요도



라. 소송행위

- 피후견인에게 소송이 필요한 경우 :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을 받은 뒤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함.
 ※ 법률 비전문가인 후견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할 수 있음

(1) 소송행위와 관련한 기본 이론 및 심판청구사례

- 긴급하게 소송행위가 필요한 경우 : 지체없이 소송행위 허가 심판청구서 제출한 뒤, 후견감독 재판부 연락, 신속한 허가 요청해야 함.

표 33 급박하게 소송행위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

<p>민사</p>	<p>피후견인이 미처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소장은 받아보았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 피후견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1심에서 패소하여 즉시 항소가 필요한 경우</p>
<p>형사</p>	<p>피후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p>

- 소송행위 허가 후 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소송 진행
- 민사소송 진행 중, 시간 촉박하면 감독인과 협의 후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검토해야 함.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은 그 사실을 후견감독 재판부에 보고해야 함.

표 34 피후견인 소송행위 지원 절차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행위 허가심판청구 → 허가심판 → 변호사 선임(법률구조공단 등 조력) → 소송 진행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 특별대리인에 의한 소송 진행 만약, 특별대리인으로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 변호사 선임(법률구조공단 등 조력) → 소송 진행 ※ 어느 경우든 후견감독재판부에 반드시 보고

(2)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가) 법률전문가 조력 원칙

피후견인을 위해 소송을 직접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함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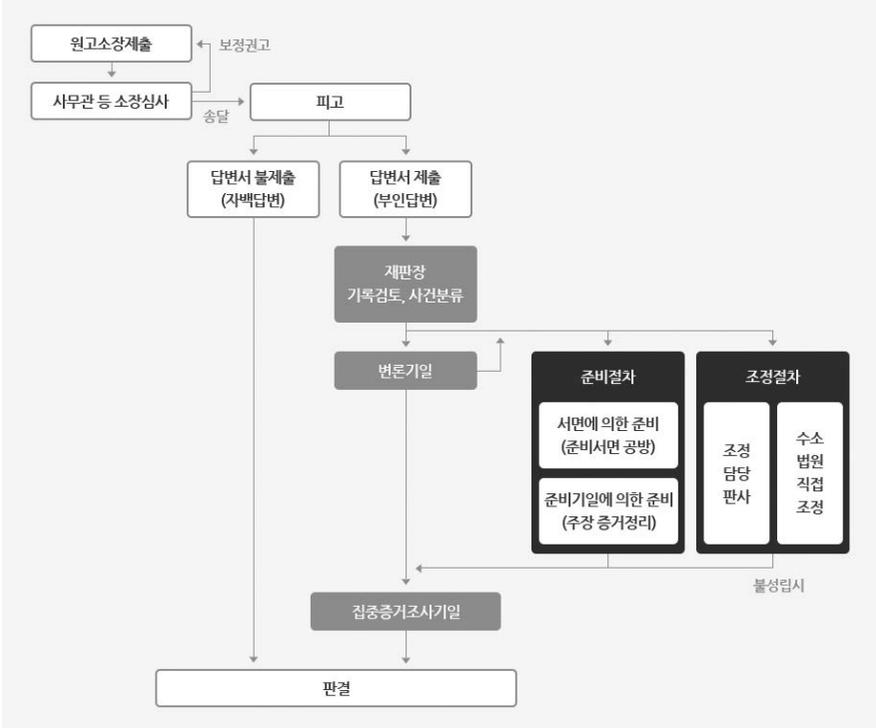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 법률구조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나) 그 밖에 각종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나홀로소송” 등

(3) 민사소송

그림 5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마.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격리행위 허가

(1) 격리행위의 의의

- 격리 :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 공간 자체는 개방되어 있으나 피후견인의 자유로운 출입 불가능한 경우는 격리공간으로 봐야 함.

유형	격리행위 여부
종합병원 입원(응급실, 일반병실)	X
종합병원 폐쇄병동 입원	O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	O
요양병원 입원	O
요양원	△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요양원 : 격리행위)
실버타운	X

(2) 격리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시 유의사항

- 격리행위 :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함.
- ① 피후견인의 상황, ② 다른 수단으로는 피후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③ 입원할 곳에 대한 정보(시설명, 주소, 연락처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3) 요양병원 입원

피후견인의 치매 정도 및 건강악화가 심각해져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어렵고, 당장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병원 입소를 검토해야 함.

(5) 요양원 입소

- 일반적인 요양원은 격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요양원 중 종사자들이 소지하는 카드를 접촉해야만 엘리베이터가 작동되는 곳, 각 층별 출입구를 폐쇄해두고 종사자들만이 개폐할 수 있도록 해둔 곳 등은 피후견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므로 격리시설에 해당함.

(6) 정신의료기관(종합병원 폐쇄병동 포함) 입원

(가)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관련한 절차를 알아야 할 필요성

-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해 있는 치매가 있는 고령자가 공공후견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음.
- 이 때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함.
- 피후견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피후견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함.

(나) 정신건강복지법상 주요 절차 소개 및 후견인의 역할

1) 동의입원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 입원 가능.

피후견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을 퇴원시켜야 함.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피후견인이 ①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의 존재, 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의 존재, ③ 후견인을 포함한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입원 신청, ④ 입원 필요성 진단(2주 입원 가능),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일치된 소견 존재
→ 피후견인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음.
- 입원기간 :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한 차례 연장, 그 후 6개월 이내 연장가능.
- 입원 연장 요건 :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일치된 진단과 후견인을 포함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서

3)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 ①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할 수 있음. ④ 경찰관이 위와 같은 자를 발견한 경우,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위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⑤ 신청 받은 지자체장은 그에 대한 진단 의뢰해야 하고, 정신과전문의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주 이내 기간 입원조치하고, 지체없이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에게 그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함. 이 때 후견인을 포함한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함. ⑥ 지자체장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그 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 의뢰가능함.

- 입원기간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일

4)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청구

- 환자 본인·보호의무자는 지자체장에게 퇴원, 퇴소·처우개선 심사 청구 가능
-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후 퇴원 또는 임시퇴원 명령,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전환, 외래치료지원,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계속 입원등 결정 중 어느 하나의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
- 환자 본인, 보호의무자 불복시 : 시·도지사에게 재심사 청구

바. 부수사건 처리 후 보고

해당 사무 종료 후 간략 정리, 법원에 보고

사. 후견인 사임

- 후견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가능
- 후견인 : 사임청구와 함께 새로운 후견인 선임 청구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 후견인의 질병이나 노령, 장기간 출장이나 이사, 피후견인과의 관계악화, 피후견인의 친족 등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악화, 업무 과중 등

아. 후견인 변경

-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 변경 필요한 경우, 후견인 변경 가능

- 청구권자 :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원 직권으로 변경도 가능
- 변경사유 : 후견인 사임 사유에 더하여 제3자가 후견인으로 더 적합한 경우,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인의 연락두절 등이 있음.

자. 직무대행자 선임

- 후견인 변경사건 : 후견인의 권한범위 변경 또는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사전처분 가능.
- 이 때 피후견인 보호의 공백 예방 위해 직무대행자 선임가능

3. 학대피해 고령자에 대한 권익옹호

가.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표 145 노인학대 유형별 정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지원

- 학대가해자가 배우자, 자녀, 친척 등 가족인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됨.
- 가정폭력 가해자 고소
-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청구 요청 또는 긴급임시조치 신청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후견인이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
-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에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항고
-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피해자보호명령 취소·변경 신청,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청구, 피해자보호명령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신변안전조치 청구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조인

- 노인학대사건 : 후견인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음.

라. 손해의 회복

(1) 손해배상소송

(2)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 피후견인이 학대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통상 경찰 수사단계에서 정보를 얻게 됨.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구조신청 검토

IV. 후견감독인의 직무

1. 개요

후견감독인 : 후견사무 감독,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 존재한 경우,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직접 피후견인 대리.

2. 주요 사무

가. 기본 후견감독사무

(1) 초기 후견감독사무

(가) 후견개시 사실 확인 등

- 후견개시심판 확정여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창설여부 확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나) 재산조사

-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조회 안내, 후견인이 조사한 재산내역이 적정인지 여부 검토
- 금융기관 등과 재산조회 중 애로사항 발생시 애로사항 해결 조력
- 임대인 등 제3자와의 애로사항 발생시 단호한 태도로 문제 해결

(다) 초기 방문 지원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처음 방문할 경우, 가능하면 후견감독인 담당자도 동행

(2) 개시 후 1년까지 감독실무

(가) 매월 정기보고서 등 검토

표 37 정기보고서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분류	항목	적정함	부적절함	비고
재 산 관 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지출한 내역들의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였는지			
	후견인이 보고하는 수입·지출내역이 실제 피후견인 계좌 입출금내역과 일치하는지			
	후견인이 방만하게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는지			
	피후견인의 재산규모에 비추어 큰 지출을 한 경우 그 사유를 적절히 소명하고 있는지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사무들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후견인이 대리권 없는 사무를 무단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후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았는지			
신 상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월 1회 이상 만나고 있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잘 파악하고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지			
	피후견인이 필요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비상연락망(조력자)을 파악하고 있는지			

(나) 매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 감독

표 38 기간 별 점검사항들

기한	점검사항	체크
보고서 제출기한 D-1개월	후견인에게 통지, 주의사항 통지, 필요서류들 확인	
보고서 제출기한 D-1주일	후견인에게 통지, 주의사항 통지, 작성 진행상황 점검, 필요서류들 구비 재확인	
보고서 제출기한	제출 여부 확인	
보고서 검토	보고서 적정 여부 확인, 첨부서류 구비 여부 확인	
기한 내 감독사무보고서 제출	감독사무보고서 작성, 제출	
보정명령에 따른 조치	법원 보정명령 여부 확인, 보정명령에 맞추어 보고서 보완 요청	

표 148 후견사무보고서 주요 검토 사항

검토사항	적정함	부적절함	비고
첨부서류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매월 정기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주요 수행 후견사무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의 수입·지출내역을 모두 소명하였는지			
부수사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향후 계획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기타 후견사무보고서에 거짓이나 사실을 과장하여 기재된 것이 없는지			

(다)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작성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양식에 작성

1) 기본사항

- 후견감독사건번호와 관할법원,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함.
- 감독인 주소 : 지자체 주소, 송달주소 : 치매안심센터 주소 기재
- 감독경과 : 감독 시행한 일시, 감독대상, 감독내용 간략 기재

2) 감독내용

후견인이 적절하게 후견사무를 수행하는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기재

3) 감독의견

후견감독인은 감독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서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감독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음.

(라) 감독사무보고서 제출

후견감독인은 감독사무보고서와 후견인이 작성한 후견사무보고서, 첨부서류들을 출력한 뒤, 우편 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

(마) 각종 서면 제출 방법

표 40 각종 서면 제출 방법

항목	제출방법
후견사무보고서, 감독사무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우편, 방문
부수사건 심판청구서	방문
보정서, 기타 서면 제출	우편, 방문

1) 방문 제출

- 원칙

표 41 제출자별 지침서류

통상제출장소	법원 1층 종합민원실
후견인 본인 제출	본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감독인 제출	위임장, 직원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부수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청구서 및 소명자료, 인지대, 송달료 납부확인서도 첨부해야 함.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구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송달료 : 환급가능, 환급계좌에는 송달료가 지출된 계좌를 기재

표 42 인지대, 송달료 납부 기준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5,000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송달료	96,000원	2명×4,800원×10회분 *사건 종결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음.

2) 우편발송

-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에 추가로 서면 제출 : 우편제출 가능
- 우편 봉투 겉면에 식별하기 쉽게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기재

(3) 후견종료시 감독사무

- (가) 연장여부 심사

- 후견종료 6개월 전 후견 연장 여부 심사

(나) 종료보고서 작성 참여 및 감독사무보고서 작성

- 종료보고서 작성 안내
- 종료보고서 적정성 감독, 감독보고서 작성, 법원 제출

(다) 종료등기신청

- 기한 내 종료등기신청 안내
- 후견인 기한 내 종료등기신청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인이 신청

(라) 긴급사무 처리

- 후견감독인 :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감독사무를 계속하여야 함.
- 후견감독인 :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

나. 개별 후견감독사무

(1)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후견감독인 :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 가능.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
- 후견감독인 : 현상을 보존하거나 피해를 막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치는 것이 적절, 후견인이 적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후견인 업무 태만으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후견인 변경,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심판청구 함께 검토

(2) 이해상반행위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함.

표 163 이해상반행위 사례

이해상반행위	구체적인 사례	주로 발생하는 영역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생활비 등으로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에게 증여할 필요가 있음.	주로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에서 발생함.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후견인이 부동산 등 담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때 소득이 있는 후견인이 대출을 받되, 피후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후견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주로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 발생함.
공동상속인인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피후견인은 예금 등 유동자산을 상속하고, 후견인은 부동산 등 그 외 자산을 상속하는 형태의 분할협의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 발생함.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피후견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후견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 많이 발생할 것임. 공공후견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는 있음.

주의)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서로 소송을 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 규정 적용되지 않음. 후견인 결격사유로 즉시 후견인 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함.	
-----------------------------	---	--

다. 후견감독사무 심화

(1)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한 사무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려고 할 때 그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동의여부를 결정
- 그 행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음.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동의를 받아 피후견인을 대리한 경우, 그 경과를 반드시 보고받아야 함.

(2) 후견부수사건과 관련한 후견감독 실무

- 후견감독인 : 후견부수사건 심판청구 조력, 법원에 적절히 의견 개진

발행일 2020. 5. 19

발행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044-202-3533, 3531

책임연구원 김성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올촌)

연구원 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유) 올촌)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울)

전규해 변호사 (사단법인 온울)

허정훈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온울)

연구보조원 황지경 차장 (법무법인(유) 올촌)

편집인쇄 디자인집(Designzip), 02-521-1474

